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우선 순위를 규정함(안 제48조제2항 신설).
- 행정대집행 비용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제5항).
- 사용종료(폐쇄)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 용도의 범위를 확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차장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4조).

II. 검토의견

개정안 제54조제2항은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매립시설 상부 토지 이용 용도 제한의 절차·방법, 제한기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안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지 않아 이를 정비하는 한편,

매립시설 상부 토지에서 제한기간 동안 허용되는 용도의 시설·행위(안 제54조제1항 각 호) 및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는 사항(안 제54조제2항) 중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개 정 안	수정의견
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시설이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 이용을 수목(樹木)의 식재(植栽), 초지(草地)의 조성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설비의 설치 및 행위에 한정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① ----- ----- ----- ----- ----- -----인정되면----- ----- -----기간을 정하여----- ----- ----- ----- ----- ----- -----.
1.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1. -----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기 위하여-----
2. ~ 6. (생략)	2. ~ 6. (생략)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5호 행위를 위한 야적시설	7. -----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위
8. (생략)	8. (생략)
9.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토양정화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9. -----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이용 용도 제한의 절차·방법, 제한 기간 및 안전기준 등 토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토지 이용의 제한기간, 토지 이용을 위한 절차·방법 및 안전기준 등에----- -----.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전문위원 이 화 실)